# 학회상 수상 규정

제정 : 1997년 9월 26일 개정 : 2008년 1월 24일 개정 : 2012년 5월 25일 개정 : 2022년 11월 25일

##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은 소음 및 진동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개발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상의 종류) 우리 학회의 상은 학회상, 특별상, 부문상으로 구분한다. ① 학회상은 학술상, 기술상, 공로상으로 한다. ② 특별상은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 학회 발전과 소음진동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의 포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기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, 필요한 경우 별도 세칙을 두어 운영한다. ③ 부문상은 각종 부문위원회, 편집위원회,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등에서 해당 분야의 발전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상훈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별도로 제정·운영한다.
- 제 3 조 (수상 기본 자격) 수상자는 그 업적이 해당부문에서 탁월하여 우리나라 소음 및 진동공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. 수상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종 포상별로 규정한다.
- 제 4 조 (수상자 선정) ① 학회상, 특별상 포상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한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「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 수상위원회」(이하 수상위원회라 한다)를 구성한다. ② 수상 위원회에서는 학회상, 특별상의 수상자격 기준에 따라 약간명의 수상 예정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. 만약, 적절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해의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 5 조 (시상) ① 시상은 매년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·추계 학술대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. ② 이외의 시상이 필요한 경우 수상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- 제 6 조 (수상취소)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.
- 제 7 조 (추천 및 발굴) ① 수상 후보자는 포상별로 규정된 요건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수상위원회에 서 발굴한 자로 한다. ②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매년 이사회가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- 가. 추천서
  - 나. 피 추천자의 이력서
  - 다. 피 추천자의 사진 (명함판)
  - 라. 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(논문, 저서, 제품은 원형제시에 앞서 이에 관한 자료로 대치할 수 있다).
- 제 8 조 (상 기금 및 기증금의 운용) 특별상의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포상별로 별도 규정한다. 단, ① 기증자가 매년 기증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대신할 수 있다. ② 기금의

법정이자로 운영되는 경우 법정이자가 수상비용에 미달할 경우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. ③ 수상 비용으로 기금이 소멸되면 해당 상훈도 폐지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 2 장 수상위원회

제 9 조 (수상위원회 목적) 수상위원회는 학회에서 시행하는 학회상, 특별상 포상과 외부추천 등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 및 운영으로 각종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 10 조 (수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수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소음진동공학회장(이하 학회장)이 매년 위촉한다. 단, 위원장은 직전 학회장이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. 만약 직전 학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현 학회장은 다른 전임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.
- ② 위원장은 수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수상위원회를 대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수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수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포상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.
- ⑤ 전문위원회는 수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고 또는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수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중요의결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.
- 제 11 조 (수상위원회 임무) ① 수상 후보는 각종 포상 목적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약간명의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. 또한, 제2조에 규정된 상 외에 외부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은 상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. ② 기타 수상 예정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수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#### 제 3 장 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

#### 제 12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상)

- 1. 상의 취지 : 소음 및 진동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학술적 업적을 이룩한 자에 대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및 추천 : ① 소음 및 진동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학술적 업적을 이룩하고, 우리 학회 논문게재 실적, 학술대회 및 학술위원회 행사 참여도, 논문 심사 참여도 등에서 뛰어난 적극성을 보인 회원으로 한다. 단, 그 업적이 완성된 후 3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. ② 수상 후보는 정회원 5명 이상, 또는 대학교의 총장, 대학원장 및 학장, 또는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제 13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기술상)

- 1. 상의 취지 : 소음 및 진동 분야 산업에서 독창성이나 실용성이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및 추천 : ① 소음 및 진동 분야 산업에서 독창성이나 실용성이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최소 3년 이상 학회행사(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부스전시, 학술위원회 세미나 및 강습회 강연 등)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(사)으로 한다. 단, 그 업적이 완성된 후 3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. ② 수상 후보는 정회원 5명 이상, 또는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, 또는 시업체 및 현업관공서의 장, 또는 기술계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제 14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공로상)

- 1. 상의 취지 : 우리 학회 발전에 많은 공헌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및 추천 : ① 우리 학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정회원으로 한다. ② 수상 후보는 임원 또는 제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## 제 4 장 특별상

#### 제 15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국제학술상)

- 1. 상의 취지 : 우리 학회는 2003년에 개최된 제32회 inter-noise 학술대회와 2008년에 개최된 제15회 ICSV 학술대회, 2020년에 개최된 제49회 inter-noise 학술대회에서 발생한 기금으로 국제학술상을 제정하여 소음진동 분야의 국제적 활동이 현저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및 추천 : ① 수상 년도 전 2년 동안 우리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음진동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(학회 유치 및 조직, 학술지 발간, 표준화, 기조강연 등)을 탁월하게 수행한 회원으로 한다. ② 수상 후보는 임원 또는 제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제 16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강월논문상)

- 1. 상의 취지 : 김광식 초대회장이 1993년에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의해 강월(江月) 논문상을 제정하여, 2020년에 개최된 제49회 inter-noise 학술대회에서 발생한 기금을 더하여, 소음진동공학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 탁월한 논문의 저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: 수상 년도 전 2년 동안 우리 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 편수가 2편 이상인 교신 저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(150만원)으로 한다.

## 제 17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양보석논문상)

1. 상의 취지 : 故 양보석 교수(부경대)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자인 이소환 회원(신호이앤티 대표, 2016년 기증)과 김선화 회원(한국에너지기술단 대표, 2022년 기증)이 기증한 기금으로 양보석 논문상을 제정하여, 소음진동공학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 응용기술논문의 저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2. 수상 자격 : ① 수상 년도 전 2년 동안 우리 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 편수가 2편 이상인 교신 저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응용기술논문을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. ② 응용기술논문 이라 함은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을 총칭한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(100만원)으로 한다.

## 제 18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진동제어최우수논문상)

- 1. 상의 취지 : 최승복 전임회장이 주관한 ERMR-2016 국제행사의 잉여금으로 진동제어최우수논문상을 제정하여, 우리 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진동 저감 및 제어 분야의 논문중 탁월한 논문의 저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: 수상 년도 전 2년 동안 우리 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진동 저감 및 제어 관련 논문 편수가 2편 이상인 교신 저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(100만원)으로 한다.

## 제 19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(주)NSV학술상)

- 1. 상의 취지 : 윤은중 회원((주)NSV 대표)이 2020년에 기증한 기금으로 (주)NSV학술상을 제정하여, 소음진동공학분이에서 산학 또는 산연 협력 연구를 통해 게재된 우수논문의 저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: 수상 년도 전 3년 동안 우리 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 편수가 2편 이상으로 최소 1편은 산·학 또는 산·연 협력 연구를 통한 논문의 교신 저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.
- 3. 시상은 상패 및 부상(300만원)으로 한다.

## 제 20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이돈출학술상)

- 상의 취지: 故 이돈출 회원(목포해양대)이 2020년에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되는 과실에 의해 이돈출학술상을 제정하여, 소음진동공학의 학술 및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: 수상 년도 전 2년 동안 우리 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 편수가 2편 이상인 교신 저자 중에서 학술 및 논문집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으로 한다.
- 3. 운영에 대한 세칙은 별도 규정(2020년 6월 26일 제정)에 따른다.
- 4. 시상은 상패 및 부상(100만원)으로 한다.

## 제 21 조 (한국소음진동공학회 케이티엠테크놀로지(주)학술상)

- 1. 상의 취지 : 송영천 회원(케이티엠테크놀로지(주) 대표)이 2020년에 기증한 기금으로 케이티엠 테크놀로지(주)학술상을 제정하여, 소음진동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수상 자격 : ① 우리 학회 논문집 게재/학술발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음진동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한 회원으로 한다. ② 당해연도에 우리 학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과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.
- 3. 운영에 대한 세칙은 별도 규정(2021년 3월 26일 제정)에 따른다.
- 4. 시상은 상패 및 부상(100만원)으로 한다.

# 부 칙

- 1. 기타 규정되지 않은 운영상의 세칙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2.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론,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3. 수상자 선정에 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.
- 4. 2022년 00월 00일 부로 학회가 운영한 각종 포상의 수상규정은 본 수상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.